

현행			개정안		
제2조(명칭과구역)부천시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은 [별표]와 같다.			제2조(명칭과구역)부천시구및동.....		
[별표] 중			[별표] 중		
자치구가아닌구및동의명칭과구역			구및동		
구명	동명	관할구역	구명	동명	관할구역
오정구	삼정동	○ 오정구 삼정동 일원 (신설)	오정구	삼정동	○ 종전 오정구 삼정동과 ○ 종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운동 57-358~361, 65-1, 66, 66-1, 67, 68, 69, 69-1, 70, 70-1, 71, 71-1~3, 72, 72-1~2, 73, 73-1, 74, 74-1, 75-1~2, 76, 77, 78번지

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점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: 1995. 1. 16.
- 나. 제안자 : 부천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5. 1. 17.
- 라. 상정일자 : 1995. 1. 26.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안이유

○ [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 설치 및 특별시, 광역시, 도간관할구역 변경 등에 관한 법률, 법률 제4802호 94. 12. 22 공포]에 의거

○ 인천 광역시 부평구(중전의 북구) 서운동 일부가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편입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도 법정동과 일치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○ 인천 광역시 부평구 서운동일부 (신도시 도로부지 7,941㎡) → 오정구 신흥동으로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없	음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 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8. 체계적 심사내용

○ 없 음

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345
의결 년월일	95. 1. 27 (제34회)

제출년월일 : 1995. 1. 16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등 9개 자치구설치 및 특별시·광역시·도간 관할구역변경 등에 관한법률, 법률 제4802호 94. 12. 22공포」에 의거
- 인천광역시 부평구 (중전의 북구)서운동 일부가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편입됨에 따라 행정동의 관할구역도 법정동과 일치시키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운동 일부 (신도시 도로부지 7,941㎡)→오정구 신흥동으로

3. 법적근거

-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

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행정동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[별표]중 오정구 신흥동의 관할구역을 "별지"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]

구 명	동 명	동 장 정 수	동사무소 위치	관 합 구 역
오정구	신흥동	1	내동 10번지 1호	○ 내동일원, 삼정동일원 ○ 종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운동 57-358~361, 65-1, 66, 66-1, 67, 68, 69, 69-1, 70, 70-1, 71, 71-1~3, 72, 72-1~2, 73, 73-1, 74, 74-1, 75-1~2, 76, 77, 78번지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[별표] 중					[별표] 중				
구 명	동 명	동 장 정 수	동 사 무 소 위 치	관 합 구 역	구 명	동 명	동 장 정 수	동 사 무 소위 치	관 합 구 역
오 정 구	신 흥 동	(생략)	(생략)	○ 내동일원, 삼정동일원 <u>신설</u>	오정구	신흥동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	○ 종전의 내동일원, 삼정동일원 ○ 종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서운동 57-358~361, 65-1, 66, 66-1, 67, 68, 69, 69-1, 70, 70-1, 71, 71-1~3, 72, 72-1~2, 73, 73-1, 74, 74-1, 75-1~2, 76, 77, 78번지 <u>번지</u>